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09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제출자)	(제출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64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2024.08.14.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09.0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제3112호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2024.08.23.	
	제3773호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2024.09.0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09.23.)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9. 24.)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9. 25.)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

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
	승)
② 판사는 <u>10년</u> 이상 제1항 각	② <u>5년</u>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u>판사의 임용에는 성</u>	<u>이 경우 20년 이상 제1</u>
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	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
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
	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
	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
	<u>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u>
<u>④</u> 법원행정처는 <u>제2항</u> 에 따른	<u>⑤</u> <u>제2항 및 제4항</u>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	
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	
을 합산하여 <u>5년</u> 미만인 판사	<u>10년</u>

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 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생략)

<신 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중이 기업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

- ② (현행과 같음)
-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 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 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사람 중에서, 2025년 1월 1일 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 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 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